

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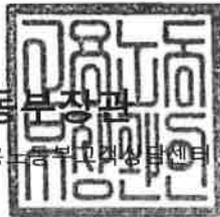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**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**

1. 관련: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-43호)
2. 혹한기 건설현장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 물품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을 안내드리니, 건설현장 점검·감독 또는 건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활용하여 아래 내용을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**햇팩, 발열조끼**는 혹한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으로서,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적어 **한시적(12~2월)으로 사용가능**
 - * 방한복, 방한모, 방한화, 방한장갑, 목토시, 귀덮개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는 「예정가격 작성기준」(기재부 예규)상 **복리후생비**에 해당되며, 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방한복 등을 구매·지급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(이하 '고시') **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항목으로의 사용은 불가**
 - 나. 위 '가'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 **제1항 제9호**에 의거 「산업안전보건법」(이하 '법')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3호에 따라 **근로자 유해·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**되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**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**.
 - 다. 다만,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 구성·운영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에는 **노사 간 협의 또는 발주처와 시공사간 협의를** 통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**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**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

수신자 청지청 건설산재지도과(산재예방지도과, 팀), 고용노동부고령실용센터

전문위원 류재은 행정사무관 이덕원 과장 전결 2023. 11. 22. 이경근

협조자

시행 건설산재예방정책과-4448 (2023. 11. 22.) 접수 산재예방지도과-7339 (2023. 11. 22.)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, 고용노동부) 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44-202-8942 팩스번호 044-862-8075 / csilver55@korea.kr / 대국민 공개